

醫療技士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
(장항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00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12. 12.

발 의 자 : 장항숙 · 안명옥 · 김재운
김춘진 · 이상민 · 이미경
장영달 · 이석현 · 양승조
유시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이 법은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거나 환자의 재활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등(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의무기록사, 안경사)에 관하여 규정하고,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요구하는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음.

한편, 청능교정 분야는 의료기사등이 실시하는 업무영역과 마찬가지로 청능교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것이나, 현재 청능교정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의사 또는 일반 보청기업소 등에서 행하여 지고 있어 청능평가, 보청기적합, 청능훈련 등의 전문지식의 보유와는 상관없이 이

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.

따라서 청능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추가함으로써 청각장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포함시킴(안 제1조 및 제3조).
- 나.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2조).
- 다.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청기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둠(안 부칙 제2조).

醫療技士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眼鏡士”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안경사”라 한다),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(이하 “청능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醫務記錄士 및 眼鏡士”를 “의무기록사·안경사 및 청능사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眼鏡士”를 “안경사 및 청능사”로,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또는 보청기업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眼鏡業所”를 각각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한다.

- ① 안경사 및 청능사가 아니면 안경 및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업소(이하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라 한다)를 개설할 수 없다.

제13조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, “眼鏡士”를

“안경사 및 청능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2호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, “眼鏡士”를 “안경사 및 청능사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“眼鏡業所”를 각각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眼鏡士”를 “안경사 및 청능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·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眼鏡業所”를 각각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한다.

제29조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4호 중 “眼鏡士”를 “안경사 및 청능사”로,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한다.

제31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眼鏡業所”를 각각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眼鏡業所”를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로, “眼鏡士”를 “안경사 및 청능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청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청기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보청기업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청기업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所”라 한다)를 開設할 수 없다.

②眼鏡士는 1個所의 眼鏡業所만을 開設할 수 있다.

③眼鏡業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·郡守·區廳長 (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게 開設登錄을 하여야 한다.

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眼鏡業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승이 정하는 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.

第13條(廢業등의 申告) 眼鏡業所의 開設者는 廢業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변경한 때에는 保健福祉部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市長·郡守·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

第14條(誇大廣告등의 금지) ①眼鏡業所는 해당 業務에 관하여

기의 調整 및 판매업소(이하 “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”라 한다)를 개설할 수 없다.

②안경사 및 청능사-----
-안경업소 또는 보청기업소-----
-----.

③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

-----.

④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

-----.

第13條(廢業등의 申告) 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

-----.

第14條(誇大廣告등의 금지) ① 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

허위 또는 과대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.

②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특정 眼鏡業所 또는 眼鏡士에게 고객을 알선·紹介 또는 誘引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眼鏡業所의 해당 業務에 관한 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第15條(보고와 檢査등) ①保健福祉部長官, 特別市長·廣域市長·道知事(이하 “市·道知事”라 한다) 또는 市長·郡守·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에 대하여 그 指導·監督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業務狀況·施設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第20條(補修教育) 保健機關·醫療機關·眼鏡業所등에서 각각 그 業務에 종사하는 醫療技士등은

-----.

② -----
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
----안경사 및 청능사-----

-----.

③ 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

-----.

第15條(보고와 檢査등) ① -----

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第20條(補修教育) -----

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

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
의하여 補修教育을 받아야 한
다.

第22條(資格의 정지) ①保健福祉
部長官은 醫療技士등이 다음
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
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免
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(생략)
2.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될 수
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眼鏡士
의 業務를 행한 때

3. (생략)

② (생략)

第23條(是正命令) 市長·郡守·區廳
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第1
2條第4項 및 第13條의 規定에
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
是正을 명할 수 있다.

第24條(開設登錄의 取消등) ①市
長·郡守·區廳長은 眼鏡業所의
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
당할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
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

-----.

第22條(資格의 정지) ①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

-----안경사 및 청능사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第23條(是正命令) -----
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

-----.

第24條(開設登錄의 取消등) ① --
-----안경업소 및
보청기업소-----

登録을 取消할 수 있다.

1.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2個所이상의 眼鏡業所를 開設한 때

2. (생략)

3. 眼鏡士의 免許가 없는 者로 하여금 眼鏡의 調製 및 販賣를 하게 한 때

4. 이 法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營業停止期間중 營業을 계속한 때

5. (생략)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登録의 取消處分을 받은 者는 그 登録取消處分을 받은 날부터 6月이내에 眼鏡業所를 開設하지 못한다.

③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免許資格停止期間중 당해 眼鏡業所는 營業을 하지 못한다.

제2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

-----.

1. -----
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안경사 및 청능사-----
-----안경 및 보청기-----
-----.

4. -----
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
-----.

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.

③ 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

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
-----.

제2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

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第30條(罰則)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1. ~ 3. (생략)
4.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眼鏡士의 免許없이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

② (생략)

第31條(罰則)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1. (생략)
2.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2個所이상의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
3.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

~~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~~

第30條(罰則) ①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~~----안경사 및 청능사-----~~

~~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~~

② (현행과 같음)

第31條(罰則)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~~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~~

3. -----

~~-----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-----~~

<p>4.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特定 <u>眼鏡業所</u> 또는 <u>眼鏡士</u>에게 고객을 알선·紹介 또는 誘引한 者</p>	<p>4. ----- ----- <u>안경업소 및 보청기업소</u>----- <u>-안경사 및 청능사-</u>----- -----.</p>
---	---